

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. 10. 16 선고 2024가단1583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9. 11.

판결 선고2024. 10. 16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8,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正本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원고는, 피고가 원고를 폭행, 협박하는 등으로 2022. 9.경 원고로부터 7,500만 원을 갈취하고, 2023. 5.경 추가로 1,400만 원을 갈취하였는데 그 후 4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이유로 피고를

상대로 나머지 8,500만 원(= 7,500만 원 + 1,400만 원 - 400만 원)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. 1) 살피건대,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폭행, 협박하여 갈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[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피고를 공갈 등으로 고소하였으나, 피고가 2024. 8. 13.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].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양시호

1)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 위 8,5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C에게 신장을 이식하여 준 피고에게 생활비와 요양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, 1,400만 원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주식을 함께 매수한 피고에게 원고가 주식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다.